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제리 의원 대표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807 |
|----------|-----|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2일

발 의 자 : 김제리, 김경우, 권영희, 이정인,
송아량, 김경영, 홍성룡, 김호평,
박순규, 김종무, 김달호, 고병국,
김화숙, 이태성, 노식래, 김정환,
문병훈, 오한아, 박상구, 박기재,
채유미, 이광호, 양민규, 송명화,
권순선, 이승미, 송재혁, 오현정,
김재형, 신정호, 이광성, 이준형
의원 (32명)

1. 제안이유

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지고 인체 유해성이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연구 설립을 요구하였고 이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, 서울연구원, 서울기술연구원 내 미세먼지 연구 조직을 통합하여 미세먼지 연구소를 구성·운영하고 있는 바,

조례에 미세먼지 연구소 설치 및 운영, 역할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연구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연구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1항 신설)
- 나. 미세먼지 생성물질 등의 발생원 조사, 발생원인 측정 및 분석, 정책 제안 등 미세먼지 연구소의 역할을 규정함(안 제13조제2항 신설)
- 다.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연구소에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미세먼지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, 정책 제언 등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연구소 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연구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발생원 조사
2. 미세먼지 발생기작 규명
3. 미세먼지 발생원인 측정 및 분석
4. 미세먼지 정책 효과 분석 및 검증
5. 미세먼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 제언
6.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연구

③ 시장은 미세먼지 연구 및 연구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(사업소 포함) 소속 공무원을 연구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, 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|---|
| <p>〈신 설〉</p> | <p>제13조(미세먼지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)</p> <p>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, 정책 제언 등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연구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발생원 조사 2. 미세먼지 발생기작 규명 3. 미세먼지 발생원인 측정 및 분석 4. 미세먼지 정책 효과 분석 및 검증 5. 미세먼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 제언 6.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연구 <p>③ 시장은 미세먼지 연구 및 연구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(사업소 포함) 소속 공무원을 연구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, 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|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(미세먼지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)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

나. 전제

- 서울시의 ‘미세먼지 연구소 구성·운영 계획’(대기정책과-7752호, 2019.4.29.)에 따른 업무, 조직 및 인력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(별첨)
- 서울시 대기정책과에서 작성한 ‘2020년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소요예산 세부 내역(안)’을 그대로 인용하여 2020년 비용 추계 작성(첨부)
- 2020년 예산(안)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(모바일 랩 구축) 18억원은 1회에 한해서 발생하고 향후 5년 동안은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
- 사무관리비,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향후 증감 없는 것으로 간주

다. 추계기간

- 5년(2020 ~ 2024), 이후에도 계속 발생

라. 방법

- 서울시 대기정책과 제출 자료를 근거로 작성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 비용 ≒ 13,461,810천원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| 연도 | 1차년도 (2020) | 2차년도 (2021) | 3차년도 (2022) | 4차년도 (2023) | 5차년도 (2024) | 합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| | | | | | |
| 세입 | | - | | | | | | |
| | | - | | | | | | |
| | 소 계(a) |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세출 | 미세먼지 연구소 설치· 운영 | 사무관리비 | 100,000 | 100,000 | 100,000 | 100,000 | 100,000 | 500,000 |
| | |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 사업비 | 2,232,362 | 2,232,362 | 2,232,362 | 2,232,362 | 2,232,362 | 11,161,810 |
| | |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(모바일 앱 구축) | 1,800,000 | - | - | - | - | 1,800,000 |
| | 소 계(b) | 4,132,362 | 2,332,362 | 2,332,362 | 2,332,362 | 2,332,362 | 13,461,810 | |
| □ 총 비용(b-a) | | | 4,132,362 | 2,332,362 | 2,332,362 | 2,332,362 | 2,332,362 | 13,461,810 |

4. 덧붙이는 의견

○ 의견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정한섭

주 무 관 박경순

☎ 02-2180-7933

e-mail : kssunbi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미세먼지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

2. 세부추계내역

- 서울시 대기정책과에서 작성한 ‘20년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소요예산 세부 내역(안)’으로 같음(첨부)

첨부 : '20년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소요예산 세부 내역(안)

| 과목구분 | 내역(안) | 소요예산(천원)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|
| 총 계 | | 4,132,362 | |
| 사무관리비 | 합계 | 100,000 | |
| | 미세먼지 연구소 정기 회의 개최 300,000원*4회*12개월 = 14,400,000원 | 14,400 | |
| | 미세먼지 연구소장 보수 지급 292,400원*4일*12개월 = 14,035,200원 | 14,036 | |
| | 미세먼지 연구소 전문가 포럼 4,000,000원*12회 = 48,000,000원 | 48,000 | |
| | 미세먼지 연구소 보고서 인쇄비 등 운영 경비 = 23,564,800원 | 23,565 | |
|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| 합계 | 2,232,362 | |
| | 연구 과제비 | 미세먼지 상세 배출원 조사 연구(서울연구원) = 500,000,000원 | 500,000 |
| | | 모델링을 통한 배출량 DB 검증 연구(서울연구원) = 500,000,000원 | 300,000 |
| | | 초미세먼지 배출원 확인 및 기여도 해석(서울연구원) = 290,000,000원 | 290,000 |
| | | 미세먼지 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출 연구(서울기술연구원) = 500,000,000원 | 500,000 |
| | 모바일 랩 운영 (서울기술연구원) | 인건비(위촉연구원) - (임금)2,466,647원*11명*12개월 = 325,597,404원 - (건강보험료)2,466,647*3.12%*11명*12개월 = 10,158,639원 - (국민연금)2,466,647*4.5%*11명*12개월 = 14,651,883원 - (고용보험료)2,466,647*1.5%*11명*12개월 = 4,883,961원 - (산재보험료)2,466,647*0.8%*11명*12개월 = 2,604,779원 ※ 2019 학술연구용역인건비 '연구원' 등급 기준 | 357,898 |
| | | 교육훈련비(여비) -(항공) 2,400,000원*9명 = 21,600,000원 -(일비) 31,200원*9명*60일 = 16,848,000원 -(식비) 80,400원*9명*60일 = 43,416,000원 -(숙박) 186,000원*9명*60일 = 100,440,000원 -(준비금) 240,000원*9명 = 2,160,000원 ※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준용 | 184,464 |
| | | 시약 구매 등 분석 재료비 = 100,000,000원 | 100,000 |
| |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| 모바일 랩 구축(서울기술연구원) = 1,800,000,000원 | 1,800,000 |